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3923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2200040)	2024.5.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이연희의원 (2200287)	2024.6.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이해식의원 (2200337)	2024.6.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노종면의원 (2200686)	2024.6.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박정현의원 (2200737)	2024.6.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박희승의원 (2201005)	2024.6.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이연희의원 (2201111)	2024.6.28.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9.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허종식의원 (2201182)	2024.6.28.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9.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권칠승의원 (2201270)	2024.7.2.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9.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황명선의원 (2202615)	2024.8.7.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9.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9.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9.4.)는 위 10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10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5.)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음에도 최종 예산 규모가 감소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기존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화"를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하여"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 제3조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 제1조(목적) -----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 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 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성화를 통한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하다. <신 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 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 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
 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 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 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 (1) -----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 설>

<신 설>

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 정법 |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 정법 1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 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 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 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실태조사) ① -----

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